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198
-----------	------

2019년 11월 22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12.12.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5.10.8)함께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자료제공, 설립상담, 교육 및 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18.8.13.)

### ○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20.2 ~ 2022.1월)
- 위탁비용 : 318,300천원 (2년간) ※ ('20년 예산) 158,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업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98호로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개요

-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6개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학교급별 현황**

(19.10.1. 설립인가 기준)

급별	초			중		고			기타			계
	방과후	매점	계	매점	계	매점	진로	계	매점	진로	계	
개수	6	1	7	4	4	10	3	13	1	1	2	26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부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동 지원센터는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상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하여 온 임의기구라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축소·폐지 등에 따라 그 존립과 운영이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예정)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105,44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 1)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성에 대한 검토

-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교육감의 사무 중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무 등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교육청에서는 동 지원센터의 사무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sup>1)</sup>, 동 업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1) 동 동의안의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동의안 [별첨1])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2018.8.13.)과 교육공무직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2019.7.3.),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2차, 2019.9.24.) 등에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위탁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와 개최, 설립 인가 신청과 인가증 발급, 설립사무의 인계, 출납금 납입,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한 바,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행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향후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교육청의 다른 센터 운영방식과의 비교

- 그러나 교육청내 설치 운영 중인 전체 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32개의 각종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교육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Wee센터의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청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가 다문화, 특수교육, 평생교육, 대안교육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동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센터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

따라 동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 3) 민간위탁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

- 한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행정영역에 민간의 자유경쟁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바,3) 행정기관이 부여된 권한과 조직을 통해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은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그 동안 동 지원센터 사무를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고4)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성과 재정투입 관점에서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2) 교육청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1] 참고.

3) 법제처 법령해석례(13-0417, 2013.10.25.)

...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범위와 사물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31., 참고.

4) 2019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실적은 [붙임2]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 2019 교육청 각종 센터 운영 현황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지원및보호에관한 조례 제9조	자치법규 (조례)	2015	307
감사관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지원센터	1	○서울시교육청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규정(훈령, 2013.10.1.)	자치법규 (훈령)	2013	42
총무과 (민원)	서울교육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훈령) 제6조	자치법규 (훈령)	2007	37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 /총무과(기록관리)	교육정보통합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운영계획(정보운영과-148, 2013.1.25.)	중앙부처 계획	2013	469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	지역교육복지센터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시민협력활성화조례제6조	자치법규 (조례)	2012	5,284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	-	-	2017	77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	○학부모지원센터운영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0.9.1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자치법규 (조례)	2010	8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2015.12.31.) 제11조의2 ○교육감결재(2011.4.),(2015.12)	자치법규 (조례)	2014(1) 2018(1)	2,717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학교혁신지원센터	1	○2016서울형혁신학교운영기본계획(2016.1.8.) ○교육감결재(2016.2.2)	자체계획	2016	19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보호교육)	과학교육센터	11	○과학·수학 정보교육진흥법제5조 ○과학교육센터정비및효율화추진계획(2017.11.21.)	법령	2003	507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보호교육)	발명교육센터	2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2002	884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	영재교육지원센터	1	○영재교육 활성화 계획(부교육감 결재, 2003.6)	법령	2003	117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방과후학교지원센터구축운영계획(2007)	자체계획	2007	65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서울학습도움센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부계획 ○자체계획	법령	2012	1,294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법령	2013	246
중등교육과 (교수학습·독서·외국어교육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법령	2004	33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1	○평생교육법(1999. 8. 31) 제14조 및 평생교육법부칙 제4조	법령	2000	16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	교육인생2모작지원센터	1	○교육인생2모작사업 기본계획(2016.3.30.)	자체계획	2016	1,66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	2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7조	자치법규	2013	111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평화세계시민다문 화교육)	센터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교육센 터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42조	자치법규 (조례)	2012	95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117학교폭력신고 센터	1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부처합동, 2012.2.6.)	중앙부처 계획	2012	4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Wee센터	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4항, 제54조제3항제2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조제9항및제14조 제1항 ○교육부훈령제285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2013	4,64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대안교육지원센 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 제5 조	자치법규 (조례)	2003	11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1	○학업중단학생복귀지원사업(교육부, 2014.3.1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제11조	자치법규 (조례)	2014	3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 터	1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법령	2007	1,94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교육감결재(2013.8.13.) ○교육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업무협약 (2016.12.6.)	법령	2016	10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18.9.28.)	자치법규 (조례)	2012	58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소규모테마형교 육여흥종합지원 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안전기본조례(시행2015.4.2.)제6 조(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제⑦항	자치법규 (조례)	2014	40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마 음 건 강 ONE-STOP지원 센터	1	○교육기본법제27조(보건및복지의증진) ○학교보건법제2조(정의), 제7조(건강검사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보건법제11조(치료및예방조치등)	법령	2013	145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학교흡연예방지 원센터	1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보건관리)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기금의사용등)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승인 : 교육감 결재(2016.2.23.)	법령	2016	810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서울진로진학정 보센터	1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법령	2005	31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안심생존수영교 육 지원센터	1	○100대국정과제54[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 현] ○2018.1.29.대통령업무보고(교육부)54-4-4상호협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초등생존수영 6학년까지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도시 서울	중앙부처 계획	2018	479

[붙임2]

## 2019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실적

### □ 2019년 학교협동조합 정기총회 교육

-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큰이야기방1
- 참여 인원 : 30 여명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 영림중, 길음중, 가재울고, 독산고, 삼각산고, 계성고, 삼성고, 선사고, 밀알학교, 성심학교, 신천초, 한울중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명
- 주요 교육 내용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강 (14:00~15:30)	학교협동조합 총회운영	○ 총회 A to Z 교육 - 총회 절차 및 주요 안건, 일정별 활동 - 총회 준비 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 운영 - 총회 운영과 자료집 제작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장이수
2강 (15:30~17:00)	2018년도 학교협동조합 재무제표 이해	○ 재무제표이해 - 2018년 사업평가 회계부분 이해하기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안 작성방법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차우승

### □ <협동의 가치 이해> 연수 실시

- 추진 목적
  - 학교구성원의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제고
  - 협동의 가치 이해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공유
  -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 운영 방법 : 농협 도농협동연수원 제휴, 전세 차량 지원
- 대상 :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추진학교
- 2기 운영 : 5/9(초·중 대상), 11/15(고교 대상, 예정)
- 연수 실적
  - 5/9(1기) 도봉초, 국사봉중 총 118명(학생 108명, 학부모 5명, 교직원 5명)  
※만족도 조사 : 88.9%(매우만족 또는 만족 이상)
  - 11/15(2기, 예정) 고등학교 희망학교 대상

### □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경영공시 대비 교육

- 목 적 :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교육을 통한 경영공시 이해 및 올바른 경영공시 작성.

**등록 방법 습득**

- 대 상 :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9년 4월 30일(화) 11시~13시
  -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 참여 인원 : 22명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 영림중, 길음중, 가재울고, 구로고, 독산고, 삼각산고, 계성고, 밀알학교, 국사봉중, 가재울고, 한울중, 가재울고, 선사고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명
- 주요 교육 내용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강 (11:00~11:50)	경영공시란?	○ 경영공시 A to Z 교육 - 2019년 변경사항 - 경영공시란 - 경영공시절차	신나는조합 정용기
2강 (12:00~13:00)	경영공시 입력방법 및 질의응답	○ 경영공시 입력방법 - 입력 - 경영공시 자료검토 - 최종승인	신나는조합 정용기

**□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워크숍 실시**

- 목적
  - 서울 학교협동조합 간 사업의 추진 연계 및 서로 배움을 위한 워크숍
  - 학교협동조합별 사례를 공유하여 소통과 화합의 네트워크의 장 마련
  - 학교협동조합의 특성상 1~2년 주기로 임직원(이사장, 이사, 감사, 활동가)가 변경되고 있어서 운영에 대한 이슈와 교육이 필요함
  - 협동조합 선진지 탐방을 통한 학교협동조합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운영 개요
  - 일시 : 2019. 6. 7.(금) 14:00 ~ 6. 8.(토) 15:00 [1박 2일]
  -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홍동마을)
  - 대상 : 21명(서울시 소재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 내용 : 협동조합 선진지 탐방 및 학교협동조합 간 소통 및 네트워크

**□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내용 : 강북권역 초·중·고 학교장 대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실시
- 일시 : 2019. 7. 15.(월) 10:00~15:00
- 주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참석자 : 초·중·고 교장(감) 등 126명 참석

**□ 2019년 사회적경제 동아리 워크숍 운영**

- 내용 : 사회적경제 강의 및 공연, 우수사례 발표,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
- 일시 : 2018. 8. 14.(수) 10:30~17:00
- 참석자 : 총 14교(중 1교, 고 13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30여명 참석

※ 2019년 향후 연수(예정)

- <협동의 가치 이해> 2기 연수 실시 : 19. 11. 15.(금)
-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일자 및 장소 : 19.10월말~11월초, 장소(미정)
  - 대상 : 강남권역 초중고 학교관리자 교장(감) 등 100명 이상
  - 주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학교협동조합의 날 및 운영사례 발표 : 19.12.20.(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98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12.12.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5.10.8)함께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자료제공, 설립상담, 교육 및 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교육부, '18.8.13.)

## ○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 ※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20.2 ~ 2022.1월)
- 위탁비용 : 318,300천원 (2년간) ※ ('20년 예산) 158,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업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세부계획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별첨1)

### 나. 관계 법령(별첨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 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별첨3)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직영 종료('19.12.31.)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I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26, 2018.8.13.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 심의결과
  - “유사직종으로 통합하거나 민간위탁 방법으로 사업 추진 검토” [노사협력담당관-4208(2019.7.9.)]

### II 추진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19~22년) : ('19년) 1,050백만원(전국), (서울)132백만원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Ⅲ

## 위탁개요 및 추진경과

###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0.2. ~ 2022.1.(2년)
- 위탁비용 : 318,300천원
  - ※ 위탁비는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위탁비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포함
- 센터구성 : 센터장 1명, 컨설턴트 2명(총 3명)
  - 수탁자는 독립된 인력·예산·조직 등을 갖추고 별도의 운영관리규정수립·운영
- 센터위치 : 서울혁신파크 내 21동 3층(은평구 통일로 684)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 자격요건
  - 민간위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경험이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
  - ※ 복수의 법인, 기관 및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위탁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 추진경과

- '15.7.24.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방안」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전략 및 과제 선정(교육감 결재)
- '15.10.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6.9.30.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구축 전략 방안 상정  
-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의회」에서 2년 한시적 운영 자문('17~'18년)
- '16.12.23.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 '17.3.01.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개소식 : '17.04.12.)
- '18.8.13. 교육부, 학교협동조합지원계획 반영(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특고 지원)
- '18.12.27.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지속 운영 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19.5.2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출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예산지원 등
- '19.7.3. 교육공무직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 심의  
- 센터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사업 추진 검토”
- '19.9.24.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2차) 지문(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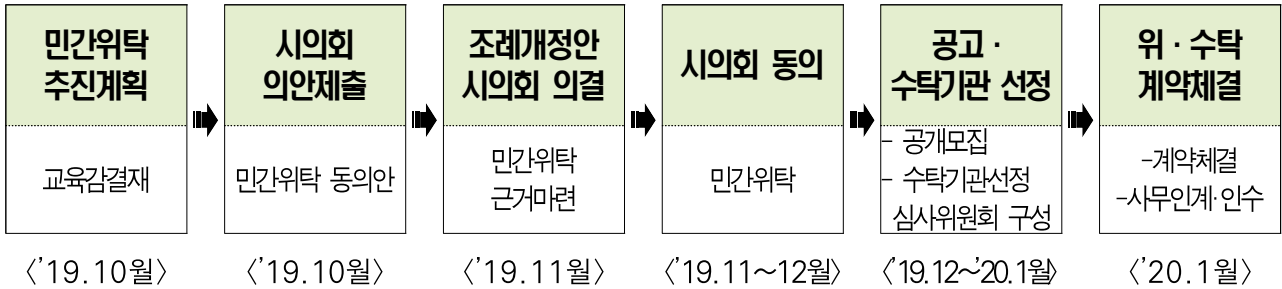
### (현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2년 10개월 운영)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77,19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설립·운영 컨설팅	교육 지원	네트워크 지원	홍보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전화, 방문, 온라인)</li> <li>• 맞춤형상담(법률, 회계 등)</li> <li>• 설립 및 운영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li> <li>• 협동조합 설립준비 교육</li> <li>• 협동조합 맞춤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설립교 네트워크</li> <li>•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li> <li>• 협업 및 네트워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li> <li>• 홈페이지 운영</li> <li>• 실태조사, 총회의사록 공증 지원</li> </ul>

# IV

## 추진 절차



### □ 시의회 협의사항

- 회 기 : 제290회 정례회('19.11.1.~12.20.)
- 사 무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추진사항

-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위해, 제287회 시의회에 제출한('19.5.24.) 학교협동조합 조례 개정안의 수정·추가 필요(시의회 협의 예정)

조례	조례개정안(제287회)	조례개정안(제290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15.10 제정)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센터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 (추가)

### 조례개정(안)

〈기 제 출〉	〈수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 □ 시의회 동의 후 행정사항

### ○ 수탁기관 선정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 선정절차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계약체결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위탁·수탁 계약 체결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계약의 체결 등)
-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 주소,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의 해지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

# V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18,300천원(2020~21년)

- 위탁운영비 : 316,000천원

· 인건비 196,774천원, 사업비 68,500천원, 운영비 50,726천원

- 사업추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 2,300천원

※ ('20년 예산) 159,150천원 (위탁운영비 158,000천원, 사업추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150천원)

○ 세부 내용(2020~21년)

구분	항목	내용	예산(원)	기준
위탁운영비	인건비	센터장	78,349,100	기본급연액, 각종수당, 퇴직금 포함 ※교육공무직인건비지원 기준(교육복지조청자 '19년)
		컨설턴트1	59,212,340	기본급연액, 각종수당, 퇴직금 포함 ※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 기준(학부모상담사 '20년)
		컨설턴트2	59,212,340	"
		<b>소계</b>	<b>196,773,780</b>	
	사업비	학교협동조합추진학교 교육및컨설팅	12,800,000	'19 교육청 기존 사업 이관
		학교협동조합등사회적 경제동아리운영	13,580,000	"
		학교협동조합운영우수 사례발표회	10,120,000	"
		학교협동조합안내설명 자료,사례집제작	12,000,000	"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10,000,000	'20 신규
		학교협동조합 경영지원	10,000,000	'20 신규
		<b>소계</b>	<b>68,500,000</b>	
		운영비	4대보험료	19,678,220
	업무추진비		3,928,000	인건비총액 X 2% 이내
	운영수당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출장비 및 여비		3,360,000	24개월 X 140,000원
	공공요금(전기, 통신료 등)		3,600,000	24개월 X 150,000원
	사무용품비		3,360,000	24개월 X 140,000원
	복리후생비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임대·관리비		4,800,000	24개월 X 200,000원
	비품구입비		2,400,000	24개월 X 100,000원
<b>소계</b>	<b>50,726,220</b>			
사업추진운영비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1,000,000	500,000원 X 1회
		운영수당	500,000	(40,000+10,000) X 5명 X 1회
		<b>소계</b>	<b>1,500,000</b>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경비	800,000	20,000원 X 10명 X 2회
		<b>소계</b>	<b>800,000</b>	
<b>총 계</b>			<b>318,300,000</b>	

**VI****향후일정**

- 시의회 의안제출 : 2019.10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의결 : 2019.11월 중
- 시의회 동의 : 2019.11~12월 중
- 공개모집 : 2019.12~2020.1월 중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 : 2020.1월 중
- 위탁·수탁 계약체결 : 2020.1월 중
- 민간위탁 운영 : 2020. 2월

## 【별첨 2】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58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첨 3】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7.3~19.10월 현재]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2년 10개월 운영)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77,19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 주요실적 ( '17.3~'19.10월 현재)

역할과 기능	운영 실적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출장(교육, 컨설팅 512건)</li> <li>○ 내부상담(상담, 회의 950건)</li> <li>○ 신규설립 12개교, 추진중 2개교</li> </ul>
홍보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보급</li> <li>○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5회(반기별 1회)</li> </ul>
교육 및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동아리 워크숍 운영 : 3회, 360명 참석</li> <li>○ 조합원·임원 교육 : 17교, 1,420명</li> <li>○ 학교협동조합원의 날 개최 : 2회, 11교 250명 참가</li> <li>○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 해냄 프로젝트* 실시(18개팀) *해냄프로젝트 사업 : 청소년들이 사회적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과 실행, 창업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 프로젝트</li> </ul>
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민·관 협의회 : 10회(분기별 1회)</li> <li>○ 이사장 네트워크 협의회 : 32회(매월 1회)</li> </ul>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및 배포 : 2회</li> <li>○ 미래교육박람회 연계 학교협동조합 부스 운영 : 1회</li> </ul>